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목 차>

1.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의 심사 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지현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국장		연락처	02-2100-2993
	과장	김종훈 과장		이메일	j.lee@korea.kr

2021. 03. 1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해산·합병 등에 대한 인가의 심사 기준 정비			
	2.규제조문	제6조의4(해산·합병 등 인가의 심사 기준)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인가 사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3.12 ~ 2021.04.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저축은행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21.7.27.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			
	7.규제내용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업, 합병, 영업전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양수, 자본금 감소 인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업, 합병, 영업전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양수, 자본금 감소를 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인가 심사 기준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법령상 근거 명확화	
		주요내용	기존에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던 인가심사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감독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므로 법령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짐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4(해산·합병 등 인가의 심사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업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3.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p>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합병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현 행	개 정 안
	<p>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p> <p>3.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4. 합병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p> <p>5. 합병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p> <p>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p> <p>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p> <p>8.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p> <p>9. 그 밖에 경영건전성, 영업구역 등</p>

현 행	개 정 안
	<p>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할 것</p> <p>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전부의 양도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p>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전부의 양수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p>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감소를 인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예금자 등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현 행	개 정 안
	<p>3. 자본금 감소가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p> <p>4. 자본금 감소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자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요건을 충족할 것</p> <p>5. 자본금 감소 이후 영 제11조의7 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것</p> <p>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축은행에 대한 해산·합병 등 인가 시의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7.27일 시행)됨

* 법률이 개정되기전에는 저축은행업감독규정(§15, §16 등)에서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하고, 심사요건 규정이 없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시행령에서는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현재와 같이 해산 등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유지하며,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은 두지 않음
규제대안2	대안명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마련
	내용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정하고, 심사기준이 미비했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마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인가 심사기준의 수정 및 변경이 용이(감독규정 개정)	인가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에 포괄 위임되어 법적 근거 미비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이 없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규제대안2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인가 심사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	금융환경 변화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가 심사기준 변경 필요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빠른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해산 등 인가심사를 받고자 하는 저축은행	법개정 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하였고,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특이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저축은행 등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대안 2를 선택

3. 규제목표

- 해산 등의 인가 심사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고, 미비했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이 신설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해산 등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저축은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감독규정 및 인가실무상 적용되던 인가 심사요건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목적·수단 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산 등 인가의 심사기준은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며,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 적용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법에서 인가 심사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 심사기준을 열거하면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에도 감독규정에 존재하였거나 인가심사 실무를 통해 적용해 오던 인가 심사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 적용하던 심사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산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21.1.27. 공포, '21.7.27. 시행)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칠 예정

3. 종합결론

- 감독규정 등을 통해 적용하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격상하여 규정하므로 형식상은 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 요건을 추가함이 없이 기존에 적용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규제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반면, 법 체계 정비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측면이 더욱 크므로 타당한 법령 개정이라고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존에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던 인가심사기준을 시행령에 상향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감독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므로 법령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짐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상호저축은행
활동제목	해산 등 인가심사의 기준 마련
비용항목	인가 심사기준이 감독규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고 일부는 신설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업, 합병,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인가의 경우에는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인가 심사기준에 상향되는 것 뿐 내용상 인가심사기준이 추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 인한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p> <p><input type="checkbox"/> 자본금 감소의 인가의 경우에는 기존에 인가 심사기준이 법령상 미비하여 실무적으로 타 법령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자본금 감소의 필요성, 감소 후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법령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가해 왔음</p> <p>○ 기존에 실무적으로 적용해 오던 심사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되는 것 뿐이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p>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상호저축은행
활동제목	해산 등 인가심사의 기준 마련
편익항목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해산 등 인가의 심사기준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